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2025. 11. 21.

사회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경과

의안 제657호로 2025년 11월 7일 남완현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술건설분야의 복잡성이 증대됨에 따라, 위원회가 각 전문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법령 및 실무 현장에 부합하는
인재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위원의 자격 요건을 관련 법령 체계와 실무 현실에 맞게 개선
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진흥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 11. 7.~2025. 11. 13.)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정 배경 및 취지

○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등 전문적 기술지식이 요구되는 위원회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제5항

-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 한편, 법 제6조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는 법에 따른 각종 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나, 현행 조례에서는 이러한 법령의 규정이 반영되지 않아, 상위법과의 정합성이 미흡한 실정임.
- 또한, 법제처의 타 법령 해석에 따르면 단순히 ‘구의회 의원’이라는 자격만으로 특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위원회 구성의 자격 요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안건번호 의견14-0177)

또한,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을 아동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직접 규정한 취지는, 보호 조치 등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조례안에서 위원의 자격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 취지에 맞게 정해야 할 것인데, 구의회 의원 등이 아동 관련 분야의 경험이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구의회 의원이라는 자격만으로 해당 위원 회의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령의 규정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반영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구성)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기준을 정비한 것으로, 제1호 및 제2호는 법에 규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구로 규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3호의 경우는 법에 “전문가”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학 조교수 이상 ▲기술사·건축사 자격취득자 ▲박사학위 소지자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위원 자격의 객관적 기준을 명확히 한 것임.
 - 이와 같은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되며,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검토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규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술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전문가 자격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